

『奎章全韻』編纂背景考

- 正祖와 洪啓禧의 관계를 중심으로 -

鄭 墉 謨 *

1. 머리말
2. 규장각 소장 『규장전운』
3. 『규장전운』의 편찬 경위
4. 홍계희의 『삼운성휘』
5. 정조와 홍계희
6. 맺음말

1. 머리말

왕실에서 운용해오던 규장각 소장 문헌들은 다른 고문헌 소장기관에 비해 가장 선본이 많고 그 종류 역시 다양하다. 규장각 소장 문헌은 정조가 규장각을 창설한 이래 국내에서 편찬 간행된 서적뿐만 아니라 매년 북경을 왕래하는 연행사를 통해 중국의 서적을 꾸준히 구득하여 확충한 것이다. 당시 중국에서는 四庫全書 편수관을 설치하고 역대 문헌을 수집하여 사고전서를 편찬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 각지의 서적, 특히 서적 출판과 유통이 가장 활발했던 강남지역의

* 본고는 2017년 12월 1일~2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열린 한국경학학회·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공동개최 국제학술대회 “경학사의 시야에서 바라본 소학류(小學類) 문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지면을 빌어 학술회의를 주최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당일 토론 및 논문심사 단계에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여러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중국 남경(南京)대학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서적들이 자연스럽게 북경 유리창 서점가에 모여들게 되었다. 바로 이때 즉위한 정조는 규장각을 창설하고 매년 북경을 왕래하는 연행사원들을 통해 중국의 서적을 다량으로 구입해 들이고 규장각 검서관 및 抄啓문신들과 함께 이들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주자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 시기 연행사원을 통해 북경 유리창 서점가에서 수입된 중국의 문헌자료 중에는 청조 고증학의 성과가 반영된 새로운 경학 연구서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의 서적들이 조선에 수입되어 유통되면서 조선의 경학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서적을 관리하면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었던 규장각 검서관 및 초계문신들의 경학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 시기를 전후하여 편찬된 소학류(字書·韻書·諺解·譯學書 등) 문헌들 또한 이러한 시대적 조류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정조의 어명을 받아 李德懋(1741-1793) 등이 편찬한 『御定奎章全韻』(이하 『奎章全韻』이라 약칭함)은 청조 음운학의 성과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국어학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경학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헌자료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규장전운』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어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면서 이 책의 국어사적인 의미가 강조되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역대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음운서를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규장전운』의 편찬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있는 朴性源(1697-1767)의 『華東正音通釋韻考』 및 洪啓禧(1703-1771)의 『三韻聲彙』와 체제 및 내용상의 비교 고찰을 통해 『규장전운』의 특징이 비교적 자세히 밝혀졌다.¹⁾ 다만 『규장전운』의 편찬 동기 및 배경에 대해서는 표면에 드러난 正祖(재위 1776-1800)의 음운학에 대한 관심이 주로 부각되면서 그 저변에 흐르는 역사적 사실들이 소홀히 다루어졌다.²⁾

1) 姜信汎, 1970 「韓國韻書研究: 三韻聲彙와奎章全韻을 중심으로」, 『成大文學』 5·6; 정경일, 1984 「奎章全韻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朴秋鉉, 2000 「英, 正祖間 세 韵書의 韓國漢字音敎: 華東正音通釋韻考, 三韻聲彙, 奎章全韻」, 『중국언어연구』 11; 姜信汎, 2000 『한국운서연구』, 태학사; 정경일, 2002 『한국운서의 이해』, 아카넷; 정경일, 2008 『규장전운·전운옥편』, 신구문화사 등 다수.

2) 이점에 있어서 安大會, 2010 「正祖 御諱의 改定: ‘이산’과 ‘이성’: 『奎章全韻』의 편찬과 관련하여」 『한국문화』 52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규장전운』의 편찬 배경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먼저 규장각 소장 『규장전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규장전운』과 『삼운성회』의 관계, 그리고 정조와 홍계희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정조와 홍계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규장전운』의 편찬 경위 및 그 의의를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2. 규장각 소장 『규장전운』

중국의 운서가 언제부터 한반도에 전해지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는 문헌자료 결핍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고려 光宗 때 과거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는 중국의 운서가 널리 보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여말선초에는 송원대의 운서가 복각되어 유통되었으며, 또한 명나라 초에 편찬된 『洪武正韻』이 전래되어 한국 음운학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조선 세종 때에는 이러한 중국 운서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우리말의 자모 ‘훈민정음’이 출현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각 시기마다 각각 서로 다른 목적에서 다양한 운서들이 편찬되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편찬된 운서 중에는 한국한자음(東音)에 중심을 둔 체계와 중국본토한자음(華音)에 중심을 둔 체계, 그리고 이를 혼합하여 한국한자음과 중국한자음을 동시에 표기한 체계로 대별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크게 다음과 분류하고 있다.³⁾

東音 표기 운서: 『東國正韻』

華音 표기 운서: 『洪武正韻譯訓』, 『四聲通攷』, 『四聲通解』

華東 양음 표기 운서: 『華東正音通釋韻考』, 『三韻聲彙』, 『奎章全韻』

字音 미표기 운서: 『三韻通攷』, 『三韻通考補遺』, 『增補三韻通考』

3) 정경일, 2002 『한국운서의 이해』, 아카넷, 9면.

규장각은 왕실 도서관으로 조선시대 편찬된 중요한 운서들을 대부분 소장하고 있는데,⁴⁾ 그 중에서도 양적으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규장전운』이다. 『규장전운』은 정조의 명을 받아 李德懋 등이 편찬하고 이후 다시 규장각에 소속된 문신들의 검토를 거쳐 정조 20년(1796)에 목판본으로 2권 1책이며 大本과 小本 두 종으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어정규장전운』을 내각에서 인출하여 올리자 규장각, 교서관, 홍문관, 장서각, 준경각, 정원, 예조, 起居注室, 5군데의 史庫, 四學에 나누어 보관하고, 時原任大臣, 閣臣, 卽宰, 시종신, 각 고을의 賦교, 賦額書院에 나누어 주라고 했다. (중략) 앞으로 공사 간의 암운은 이 운서의 의례와 式令을 따르도록 서울과 지방의 시험을 주관하는 관사에 분부하라.”라고⁵⁾ 하는 반사 교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간행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정조는 이때 전국의 賦교 334곳, 사액서원 262곳을 포함하여 중앙 관서, 팔도감영, 그리고 내각의 대신 등에게 『규장전운』의 대본 1189책과 소본 294책 도합 1483책을 반사했다.⁶⁾ 무엇보다도 공사의 각종 시험에서 암운은 반드시 『규장전운』에 의거해야만 한다는 행정명령이 수반되었으므로 이 책은 이후 짧은 시간 내에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이처럼 『규장전운』은 조선 후기에 가장 널리 유통되고 실용화되면서 중앙이나 지방에서 여러 번 重刊되었기 때문에 이본이 많은 편이지만 내용상의 차이는 크지 않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규장전운』은 모두 30종이 확인되며, 이를 판본 및 대소 등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9종으로 분류된다.⁷⁾

4)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經·子部) 1』(1978 서울대학교도서관)과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續集(經·子部) 2』(2001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해 보면 한국본 운서류는 총 26종의 운서 수백 종의 판본이 혼존하고 있다.

5) 『일성록』 정조 20년(1796) 8월 11일(계미)조, “敎曰, 御定奎章全韻, 內閣印出, 進呈內外閣, 玉堂, 藏書閣, 尊經閣, 政院, 禮曹起居注室, 五處史庫, 四學分藏, 而時原任大臣, 閣臣, 卽宰, 侍從, 各邑鄉校, 賦額書院, 分頒. (중략) 此後公私押韻, 準此韻書義例式令事, 分付京外掌試之司.”

6) 辛承云, 2004 「『奎章全韻』을 통해서 본 正祖朝의 書籍 頒賜와 그 規模」 『한국도서관정보 학회지』35-4.

7) 규장각 소장 판본의 분류 및 서지 사항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gak>.

- ① 〈奎 1397, 1399, 26617, 3544, 3545, 4028, 4029〉, 〈가람 古 416-G999e, 古 411.5-J466e, 古 3914-3, 古 3914-3C⁸⁾
- ② 〈奎 7582, 7700〉, 〈一簾 古 416-G999f〉, 〈가람 古 416-G999b, 가람 古 416-G999d⁹⁾
- ③ 〈奎 7661¹⁰⁾
- ④ 〈가람 古 416-G999a¹¹⁾
- ⑤ 〈奎 7332, 7346, 7494, 7495, 7562, 7699¹²⁾

snu.ac.kr)에서 제공하는 어문학자료해제(해제자: 이진호)를 참고하여 작성함.

- 8) 1796年(正祖 20), 2卷 1册. [木] 33.4×21.5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1.7×15.7cm, 有界, 10行 18字, 注雙行. 版心: 上白魚尾; 表題: 御定奎章全韻(奎 1399, 3544, 3545), 奎章全韻(奎 1397, 4028, 4029); 內賜記: 嘉慶元年(1796)八月日 內賜鼎足山城 御定新印奎章全韻(奎 1399), (中譜) 太白山城(중략) (奎 3544, 3545); 印: [奎章/之寶](朱文方印, 奎 1397, 1399, 3544, 3545, 4028, 4029, 古 3914-3C, 古 411.5-J466e), [史館藏](朱文長方印) (奎 1399, 3544, 4028, 4029), [月宇藏](朱文半圓印), [??/山房](方印, 山:朱文, 房:白文) (이상 古 411.5-J466e), [朴氏/宗/?希顏](白文朱橫長方印), [畫扇/齋圖/書印](白文朱方印) (이상 가람 古 416-G999e); 〈奎 26617〉, 〈古 3914-3〉은 表紙 改裝. 〈奎 26617〉은 落張本임.
- 9) 1796年(正祖 20), 2卷 1册. [木] 25.8×15.9cm, 四周雙邊, 半葉匡郭: 15.8×10.5cm, 有界, 10行 18字, 注雙行. 版心: 上白魚尾. 表題: 御定奎章全韻(奎 7582, 7700), 奎章全韻(一簾, 가람 古 416-G999d). 版心題: 奎章全韻. 內賜記: 嘉慶元年(1796)八月日 內賜太白山城 御定新印奎章全韻(奎 7582), (中譜) 五臺山(중략) (奎 7700). 同治三年(1864)八月日 秋到記賦次上生員成大永 內賜奎章全韻一件(一簾). 印: [奎章/之寶](朱文方印, 奎 7582, 7700, 一簾), [史館藏](朱文長方印) (이상奎 7582, 7700), [景/考](朱文方印), [成氏/家藏](白文朱方印), [成印/大永](白文朱方印), [昌寧/後印](朱文橢圓印) (이상 一簾), [/?軒](黑文方印, 가람 古 416-G999b), [川/宁](朱文方印), [錦成/后人](朱文方印), [朴印/泳厚](白文朱方印) (이상 가람 古 416-G999d)
- 10) 全州, 西溪. [1800年(正祖 24)], 2卷 1册. [木] 25.6×17.3cm, 四周雙邊, 半葉匡郭: 16.1×10.5cm, 有界, 10行 18字, 注雙行. 版心: 上白魚尾. 表題·版心題: 奎章全韻. 刊記: 庚申(1800)春刊. 表題紙: 內賜原本 御定奎章全韻 西溪藏板. 印: [集玉齋](朱文長方印), [帝室/圖書/之章](朱文方印)
- 11) 1880年(高宗 17), 2卷 1册. [木] 31.8×21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1.5×15.6cm, 有界, 10行 18字, 注雙行. 版心: 上白魚尾. 表題·版心題: 奎章全韻. 內賜記: 光緒六年(1880)六月日七夕 製賦次上進士宋淳鐸 內賜奎章全韻一件. 印: [奎章/之寶](朱文方印)
- 12) 1894年(高宗 31), 2卷 1册. [木] 25.4×15.9cm(奎 7332). 四周雙邊, 半葉匡郭: 16.1×10.5cm, 有界, 10行 18字, 注雙行. 版心: 上白魚尾. 表題: 奎章全韻(奎 7332, 7346, 7494, 7495). 版心題: 奎章全韻. 內賜記: 光緒二十年(1894)二月日 日次儒生以製代講應製 次上初舉朴熙陽 內賜奎章全韻一件(奎 7332). 印: [奎章/之寶](朱文方印, 奎 7332, 7346, 7494, 7495,

⑥ 〈奎 4746〉, 〈一簾 古 416-G999〉¹³⁾

⑦ 〈一簾 古 416-G999g〉¹⁴⁾

⑧ 〈奎 2447〉, 〈古 3914-3A〉¹⁵⁾

⑨ 〈古 3914-3B〉¹⁶⁾

이본들은 匡郭의 크기에 따라 大本과 小本으로 나누며, 『규장전운』①④⑥⑦⑧⑨는 대본에 속하고 ②③⑤는 소본에 속한다. 『규장전운』①②는 각각 대본과 소본으로 1796년에 함께 간행된 초간본이다. 『규장전운』③은 표제지에 ‘內賜原本御定奎章全韻西溪藏板’의 기록이 있어 전주에서 간행된 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권말에 ‘庚申春刊’의 간기가 있는데, 여기서의 ‘庚申’년은 1800년(정조 24)으로 추정된다. ④⑤는 내사 연대에 따르면 1880년과 1894년에 각각 간행된 것들로 보인다. ⑥⑦⑧은 간기가 없어 그 시기를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19세기 후반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⑨는 간기가 없는 필사본인데 역시 19세기 후반의 이본인 듯하다.

『규장전운』은 四聲(平聲 · 上聲 · 去聲 · 入聲)韻 체재에 취하고 있다. 즉 평 · 상 · 거 · 입의 사성을 함께 배열한 4단식 방식을 취하고 총 106개의 韵目을 설정한 뒤 사성에 속하는 글자들을 한 면에 모두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성에 소속된 각 글자는 한글의 자모순에 따라 배열하고 있다. 예를 들어 東韻에 속하는 글자들의 경우에 ‘公, 東, 蒙, 蓬’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牙舌脣齒喉

7562, 7699), [帝室/圖書/之章](朱文方印) (이상奎 7346, 7494, 7495), [編輯局保管](朱文長方印,奎 7562)

13) [19世紀] 2卷 1册. [木] 29.1×18.9cm(一簾). 四周雙邊. 半葉匡郭 : 21.5×15.1cm, 有界, 10行 18字, 注雙行. 版心 : 上白魚尾. 表題 : 奎韻(一簾). 版心題 : 奎章全韻. 印 : [帝室/圖書/之章](朱文方印,奎 4746)

14) [19世紀] 2卷 1册. [木] 28×19.5cm. 四周雙邊. 半葉匡郭 : 20.1×15.5cm, 有界, 10行 18字, 注雙行. 版心 : 上白魚尾. 表題 · 版心題 : 御定奎章全韻.

15) [19世紀] 2卷 1册. [木] 34.5×22cm(奎 2447). 四周雙邊. 半葉匡郭 : 20.5×15.3cm, 有界, 10行 18字, 注雙行. 版心 : 上白魚尾. 表題 : 奎章全韻. 版心題 : 奎章全韻. 印 : [奎章/之寶](朱文方印), [學部/圖書](朱文方印), [編輯局保管](朱文長方印) (이상奎 2447)

16) [19世紀] 2卷 1册. [寫] 35.7×21.4cm. 黑畫邊欄. 四周單邊. 半葉匡郭 : 21.6×15.8cm, 有界, 10行 18字, 注雙行. 表題 : 奎章全韻. 版心題 : 罫음. 印 : [聲齋山房](朱文椭圓印), [石/坡](朱文方印), [覃谿](朱文方印)

의 한글 자모순 배열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글자를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한 것은 흥계희가 편찬한 『三韻聲彙』와 동일하다. 또한 각각의 글자에 대해서는 東音(조선음)과 華音(중국음)을 모두 표시하는 華東 양음 표기법을 따르고 있는데, 화음은 ○ 안에 넣어 위쪽에 표시하고 동음은 □ 속에 넣어 화음의 아래쪽에 표시하였다. 동음에서는 같은 小韻字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화음에서 그 음이 다른 경우에는 ○ 속에 그 화음을 밝혀 적고 있다. 예를 들어 ‘公’과 ‘空’은 동음에서는 그 음이 ‘공’으로 같은 小韻字이지만 화음에서는 음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公’에 대해서는 ‘궁’을, ‘空’에 대해서는 ‘쿵’이라는 화음을 ○ 속에 밝혀 주고 있다. 한 글자가 다른 韵으로도 사용될 때에는 ○ 속에 해당하는 韵을 표시하고 있다. 가령 東韻에 속하는 ‘控’은 江韻으로도 쓰이므로 ○ 속에 ‘江’을 넣어 이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둘 이상의 성조를 가진 글자에 대해서는 그 성조를 모두 표시하고 있다. 평성, 상성, 거성으로 쓰이는 ‘空’의 경우, 평성, 상성, 거성란에 각각 배열하고 평성란에서는 상성, 거성으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상성란에서는 평성, 거성으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거성란에서는 평성, 상성으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두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1〉『규장전운』

『규장전운』에서 채택한 東音은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자의 俗音까지 표시하고 있는 朴性源의¹⁷⁾ 『華東正音通釋韻考』(『正音通釋』)와 비교해 볼 때, 규범음은 두 책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이 책에서는 俗音을 전혀 표시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나타난다. 한자의 俗音은 이 책의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는 『全韻玉篇』에서 다루고 있다.¹⁸⁾

3. 『규장전운』의 편찬 경위

조선시대에 편찬 간행된 운서들은 크게 韵을 분류 배치하는 방식에 따라 둘로 양분된다. 하나는 三聲(平聲·上聲·去聲)만을 한 면에 제시하고 入聲을 부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四聲(평성·상성·거성·입성)을 한 면에 배열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운의 분류 배치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조선후기 李圭景(1788-?)은 「韻書辨證說」에서 다음과 같이 논변하고 있다.

대개 三韻으로 불리게 된 것은 원 나라 周德清의 『中原音韻』에 三聲을 병행하였으므로 잇달아 삼운이라는 명칭이 있었다. 고려조에서 삼성의 韵을 따랐고,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도 잇달아 원 나라와 고려의 운을 통용하면서 『三韻通考』라는 책을 금과옥조처럼 받들었으니, 이는 그때의 형세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 후에 承旨 金濟謙이 察訪 成孝莽와 더불어 『增補三韻通攷』를 지은 일이 있었고, 洪啓禧는 또 『三韻聲彙』라는 책을 지었지만 이는 대개 『중원음운』이 삼성을 병행한 잘못에서 연유한 것이다. 우리나라 운서로서 사성으로 불리는 것에는 『四聲通解』와 『四聲通攷』가 있어서 沈約의 『四聲類譜』의 옛 규모를 잊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직 미흡한 것이었다. 중국은 章黼의 『韻學集成』이 있어서 입성을 아울러 편집함으로써 크게 새로운 예를 시작하였다. 우리 正祖大王이 閣臣 徐命膺에게 명하여 『奎章韻瑞』를 편수하게 할 적에도 장보의 사성의 예를 따랐다.¹⁹⁾

17) 朴性源(1697-1767)은 조선 후기의 학자이다. 본관은 密陽, 자 士濬, 호 圃菴, 進士를 지냈으며 예학에 뛰어났고 음운학에도 밝았다. 저서에 『華東正音通釋韻考』, 『華東叶普通釋』, 『祭禮抄』 등이 있다.

18) 姜信沆, 앞의 논문.

19)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1 · 經典類2 · 小學韻書 · 韵書辨證說2」 “夫三韻爲名者, 因元

여기서 이규경은 조선에서는 원 나라 주덕청의 『중원음운』의 영향으로 고려 때 이미 평성·상성·거성 삼성 계통의 『삼운통고』가 편찬되어 많이 통용되었으며, 이후 이를 증보하고 보완한 『증보삼운통고』 및 홍계희의 『삼운성휘』가 편찬되었지만 삼성의 운만을 병행한 것은 『중원음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한 『사성통해』와 『사성통고』는 사성체계를 갖추기는 했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였는데, 정조가 서명옹(1779-1787)에게 『규장운서』를 편찬하도록 하면서 중국 章黼의 『운학집성』의 새로운 예에 따라 입성을 포함한 사성운 체재를 채택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처럼 이규경은 조선의 운서 발전에 있어서 정조의 사성운 체재에 대한 관심과 역할을 강조하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정조의 명을 받아 편찬한 『규장전운』에 이르러서 비로소 4성의 原法에 부합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곧 사성운 체재를 갖춘 『규장전운』이 조선 운서의 규범이라 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 정조는 일찍부터 운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이규경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조는 『규장전운』을 편찬하기 이전에 이미 서명옹에게 명하여 『규장운서』를 편수하도록 했다.

세상에서 沈約을 音韻의 宗匠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백 년간을 내려오면서 이견이 분분하다. (중략) 우리나라는 세종조에 유신들에게 명하여 운서를 편찬하게 하였는데 끝내 실전되었고, 오늘날 사용하는 『三韻通考』는 출처를 알 수 없다. 박성원이 편찬한 『華東正音』은 다시 『삼운통고』를 바탕으로 약간의 글자를 추가한 것인데, 이 두 책은 모두 四聲을 세 개의 韵으로 만들었으니 또한 매우 엉성하다. 더구나 그들이 엮은 책은 심약의 운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各部에 심약의 운이 탈락한 것이 수없이 많고 前韻과 後韻의 순서가 뒤바뀐 것, 평성·상성·거성이 뒤섞인 것도 한둘이 아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가서 시를 창화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韻學에 대한 無知로 웃음거리가 되곤 하니 文教에 누가 됨이 어느 정도이겠는가. 내가 기해년(1779, 정조3)에 閣臣 徐命膺에게 지시하여 『禮部韻略』 이후에 나온 몇 종의 운서

周德清『中原音韻』, 併行三聲, 故仍有三韻之名. 麗朝襲三聲之韻, 入我國初, 仍用元麗之韻, 而有『三韻通考』書, 奉作金科玉條, 時勢然也. 故其後金承宣(濟謙)與成察訪(孝基), 有『增補三韻通考』之作, 而洪啓禧復有『三韻聲彙』之書, 盖緣『中原音韻』三聲之誤也. 東韻之以四聲爲名者, 有『四聲通解』·『四聲通考』, 不失沈隱侯之舊譜, 然猶未洽焉. 中原則有章黼『韻學集成』, 併編入聲, 大破天荒. 我正廟, 命閣臣徐命膺, 編『奎章韻瑞』, 從章氏四聲之例矣.”

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고증하여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을 취하여字母의 균형과 조화의 문제에서부터 古叶·古通에 이르기까지 책을 펴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만들도록 하였다. 항목은 四聲譜, 音韻, 樂韻, 古韻이다.²⁰⁾

정조는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평성·상성·거성·입성을 함께 표시하지 않고 평·상·거성 소속자만 따로 한데 묶어 표시하고 입성 소속자를 각 운의 끝이나 운서의 끝에 표시하는 전래의 체재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정조는 『삼운통고』 및 이를 바탕으로 약간의 글자를 추가한 박성원의 『華東正音』(『華東正音通釋韻考』)이 모두 삼성운 체재를 취하고 있음을 문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조 3년(1779)에 서명옹에게 운서 제작을 주문하고 입성을 포함한 사성운 체재를 채택하도록 지시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덕무 또한 「奎章全韻凡例」에서 정조가 서명옹에게 『규장운서』를 편찬하도록 하면서 중국 章翻의 『운학집성』의 새로운 예에 따라 입성을 포함한 사성운 체재를 채택하도록 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²¹⁾ 또한 『增補文獻備考』 「藝文考」에도 “『奎章韻瑞』八卷, 正祖乙亥(1779), 命徐命膺編”이라는²²⁾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이때 ‘『奎章韻瑞』 八卷’이 편찬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간행되지 못했다.

이처럼 정조는 일찍부터 사성운 체재 운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명옹 등에게 이러한 운서를 편찬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정조 11년(1787)에 정조는 사성운 체재로 편찬했다는 『규장운서』가 아닌 박성원이 편찬한 삼성운 체재의 『화동정음통석운고』를 채택하여 그 명칭을 『正音通釋』이라 개정하고 내각에서 간행하도록 하면서 여기에 다음과 같은 서문을 붙이고 있다.

-
- 20) 『弘齋全書』 권183 「羣書標記5·命撰一·奎章韻瑞八卷寫本」 “世以沈約爲音韻之宗, 然數百年來, 聚訟紛然。(중략) 我世宗朝命儒臣撰集韻書而卒無傳, 今之三韻通考, 不知出處。朴性源華東正音, 又因通考, 增入若干字, 而二書皆以四聲爲三韻, 則鹵莽亦甚矣。况其所編, 與沈韻大相逕庭, 各部之脫落沈韻, 已不勝其多。而前後韻之錯編, 平上去之貿亂, 亦復不一而足。故東人之入中州唱和者, 往往以韻學見笑, 其玷累文教, 為如何哉。予於己亥, 命閣臣徐命膺, 就禮部韻略以下數家韻書, 參互考證, 去短取長, 自字母均調, 以及古叶古通, 使之開卷瞭然。其目曰四聲譜, 曰音韻, 曰樂韻, 曰古韻。”
- 21) 『青莊館全書』 권24, 「編書雜稿四·奎章全韻凡例」 “今定四聲, 槩從章氏, 而閣臣徐命膺編奎章韻瑞, 已有此例。”
- 22) 『增補文獻備考』 권245, 「藝文考」4 「列朝御定諸書」.

(전략) 근세 사람들은 거칠고 구차하여 초·중·종 三聲과 字母七音의 법이 있는 것도 모르고 시속에 따라 잘못 읽기가 오히려 변형된 중국음보다도 더하니, 그것이 애말로 바로잡아야 할 잘못인 것이다. 박성원이 지은 『화동정운』에서 그러한 것들을 꽤 바로잡았고 또 『삼운통고』 원본을 대본으로 하여 글자마다 주석을 달면서도 감히 그 序次만은 바꾸지를 못했는데, 그 역시 의문점은 그대로 두자는 뜻이었다. 내가 그 책을 취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과거시험장에는 어떤 책도 끼고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고 나도 그를 염히 단속하여 비록 문신들의 응시 때에도 절대 허락을 않고 있지만 韻書만은 예외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운서는 사람마다 다 외우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내각에 명하여 이 책을 인쇄 반포하게 하고, 이어 이 서문을 쓰는 것이다.²³⁾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운서는 과거시험장에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덕무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과거시험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운서는 金濟謙과 成孝菴가 『三韻通考』을 증보한 『增補三韻通考』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⁴⁾ 따라서 정조는 먼저 서명옹에게 이를 대체할만한 운서 『규장운서』를 편찬하도록 했지만 만족스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이번에는 박성원이 편찬한 『화동정음통석운고』를 채택하여 내각에서 간행하도록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박성원이 편찬한 『화동정음통석운고』 곧 『正音通釋』이 이전의 운서들을 대신하여 과거시험장에서 사용할 공식적인 운서로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덕무의 「奎章全韻凡例」에 의하면, 정조 16년(1792) 3월 과거시험장에서 사용하도록 한 운서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정조는 사성운 체재의 새로운 운서를 편찬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²⁵⁾ 이렇게 하여 편찬

23) 『弘齋全書』 권9, 「序引二·正音通釋序」 “(전략) 近世人士，鹵莽苟且，隨俗誤讀，不復知有初中終三聲字母七音之法，殆甚於華音之變古，是則所謂轉訛而可正者也。朴性源所撰華東正韻，頗能正之，又就三韻通考原本，逐字分註，不敢易其序次，其亦存疑之意也。予是以有取乎是書，科場挾冊有禁，予申嚴之，雖文臣應試，亦不許。惟許韻書，以盡誦韻書，非可人人責也。遂命內閣印布是書，書此而弁之。”

24) 『青莊館全書』 권60, 「蓋葉記七·三韻通考」 “今世所行三韻通考，以平上去分三格，作橫看，若年表世譜，附入聲于後，分註二字，無過三字，總九千七百三十二字。金承旨濟謙，增千七百九十八字，通用科場，爲便要切近之書。”

25) 『青莊館全書』 권24, 「編書雜稿四·奎章全韻凡例」 “壬子三月，以場屋頒行韻書多鹵莽，命

된 것이 곧 『규장전운』이다.

『규장전운』은 정조 16년(1792) 이덕무가 중심이 되어 편찬 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해에 일단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덕무가 사망한 후 다시 尹行憲, 徐榮輔, 南公轍, 李書九, 李家煥, 成大中, 柳得恭, 朴齊家 등 많은 규장각 문신들이 참여하여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정조 20년(1796)에 정식으로 간행되었다.²⁶⁾ 또한 편찬과 검토 과정에서 규장각에 소장된 수많은 문헌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규경은 「韻書辨證說」에서 『규장전운』 편찬시 주된 참고 운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운의 배열은 『洪武正韻』字母의 예를 모방하고, 음의 번역은 『四聲通解』 諺音의 예를 사용하고 通韻과 轉韻에는 『古今韻略』을 따르고, 叶韻에는 吳棫의 『韻補』를 따르고, 四聲은 章黼의 『韻學集成』을 취하여 모두 바로잡아 완성하였다.²⁷⁾

자모와 번역음은 조선에서 통용되던 『洪武正韻』의 자모 곧 『洪武正韻譯訓』과 『四聲通解』에서 각각 취하고, 통운과 전운은 邵長衡의 『古今韻略』을, 협운은 吳棫의 『韻補』를, 그리고 사성은 章黼의 『韻學集成』을 취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금의 운서를 절충하고 신구의 음운에 맞추어서 한 시대의 법규를 마련한 『규장전운』이 완성되었다고 했다. 이규경은 또한 「音學辨證說」에서, “우리 王考(이덕무)가 『규장전운』 편집을 맡았을 적에 인용한 도서 목록이 있었다. 그래서 이를 베껴서 여기에 덧붙임으로써 운학과 음학을 연구하는 데에 하나의 표준과 근거를 삼으려고 한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라고²⁸⁾ 하면서 『규장전운』을 편찬할 때 참고한 음운학 관련 역대 문헌 백여 종을 거론하고 있다. 이곳에 열거된 자료는 조선의 기존 음운서는 물론이고 거의 같은 시기 청나라 문헌까지도 망라되어 있

改撰，務令繁簡適中，乃以四聲分四層，古叶古通，多取邵氏韻畧。”

26) 정경일, 2008 앞의 책, 49-51면 참조.

27) 『五洲衍文長箋散稿』「經史篇1·經典類2·韻書·韻書辨證說一」“排韻倣 『洪武正韻』字母之例，翻音用『四聲通解』 諺音之例，通轉用『古今韻略』，叶韻用吳棫『韻補』，四聲取章黼『集成』，彙括以成。”

28) “『字典』有等韻之法，顧炎武有『音論』，覽此則音韻之學，如視諸掌。我王考編『奎章全韻』時，有引用書目，故謹鈔附，以爲韻學之矩股，音學之淵藪，其目曰，(后략)”

다. 여기서 제시한 서목 중에는 이미 『奎章總目』 등에 수록된 문헌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록을 통해 18세기 말에 조선에서 수용되었던 중국 음운서의 대략을 추정할 수 있다.²⁹⁾

정조는 내각에서 새로 간행한 『규장전운』을 중앙 관서 및 전국 각지에 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운서에서 三韻으로 글자를 분류하고 入聲을 따로 두는 것은 운이 본래 四聲인 뜻과는 어긋난다. 押韻에 增韻과 입성을 쓰지 않는 것도 通韻과 叶音의 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니, 너무도 엉성하고 어리석다 하겠다. 이 때문에 널리 전거를 찾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이 책을 편찬하도록 명한 것이다. 앞으로 공사 간의 압운은 이 운서의 의례와 式令을 따르도록 서울과 지방의 시험을 주관하는 관사에 분부하라.³⁰⁾

이전의 운서들이 평·상·거성만 같이 묶고 입성을 따로 배열하는 체재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했던 정조는 『규장전운』에서 평·상·거·입의 사성을 함께 배열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각종 시험에서는 이 책의 압운에 의거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장전운』은 무엇보다도 당시 과거시험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삼성운 체재의 불합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편찬되었다고 하였다. 정조는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새로운 운서 편찬을 기획했지만 『규장전운』을 완성하여 간행하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되는 점은 박성원 및 그가 편찬한 『화동정음통석운고』에 대한 정조의 평가에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규장운서』와 『규장전운』을 편찬하면서 정조는 『증보삼운통고』 및 이를 바탕으로 약간의 글자를 추

29) 다만 이규경이 인용한 서목 및 저자 등에는 많은 오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 서목의 대부분이 『康熙字典』 등에서 재인용하고 있어 실제 여기서 제시한 서적들이 모두 조선에 전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30) 『일성록』 정조 20년(1796) 8월 11일(계미)조 “我東韻書之彙, 以三韻別置入聲, 有非韻本四聲之義, 而不押增韻與入聲, 亦不曉通韻叶音之格, 魯莽莫甚, 所以博據廣證, 命編是書者也. 此後公私押韻, 準此韻書義例式令事, 分付京外掌試之司.”

가한 박성원의 『화동정음통석운고』가 모두 삼성운 체재를 취하고 있음을 문제시하였다. 그런데 『화동정음통석운고』를 취하여 내각에서 간행하면서 붙인 「正音通釋序」에서 정조는 “또 『삼운동고』 원본을 대본으로 하여 글자마다 주석을 달면서도 감히 그 序次만은 바꾸지를 못했는데, 그 역시 의문점은 그대로 두자는 뜻이었다. 내가 그 책을 취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박성원이 편찬한 『화동정음통석운고』가 『삼운동고』의 삼성운 체재를 따라 주석을 달면서 그 序次를 바꾸지 않았음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정조가 영조시기 관찬 운서로 편찬 간행되어 당시 박성원의 『화동정음통석운고』보다 널리 유포되어 이용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홍계희의 『삼운성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은 홍계희의 『삼운성회』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4. 홍계희의 『삼운성회』

『삼운성회』은 영조 27년(1751)에 홍계희가 『三韻通考』와 『四聲通解』, 『洪武正韻』 등을 참고로 하여 편찬 간행한 운서이다. 우리나라 현실 한자음을 위주로 하고 字順도 한글 자모순으로 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게 편찬하였다. 규장각에는 8종의 『삼운성회』가 소장되어 있다. 그중 〈奎 3576, 3640, 4251, 4893〉, 〈가람 古 495.16-H757s-v.1-3〉는 각 卷首에 金在魯의 序와 卷下末에 洪啓禧의 跋과 함께 ‘辛未(1751)季夏芸閣開板’이라는 刊記가 붙어 있어 초간본임을 알 수 있다. 異本인 〈古 3914-9〉에는 서문이 落張되어 있으나 ‘己丑 季秋 完營開板’이라는 刊記가 있는데, 여기서 ‘己丑’년은 영조 45년(1769)으로 이때 전주에서 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¹⁾ 〈古 495.115-H757s〉는 〈古 3914-9〉와 동일한 판본

31) 영조 27년(1751)에 간행된 『삼운성회』 초간본의 수록 한자 수가 12,965자인데 반해 18년 후의 영조 45년(1769)의 재간본은 이보다 6자 많은 12,971자를 수록하고 있다.

이나 卷上만의 零本이다. 또 다른 異本인 〈一篆 古 413.1-H758s〉 역시 卷上만의 零本이다. 그러나 이들 版본간에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이 책은 『삼운통고』의 체재를 따라 각 면을 3단으로 구분하여 平·上·去 三 聲의 글자를 韻目에 따라 배열하고 卷末에 入聲의 글자를 일괄하여 붙여 놓고 있다. 그리고 版心에 韵目을 표시하여 열람의 편의를 기하였다. 字順은 『삼운통고』와는 달리 한국한자음에 입각하여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하고 있는데 위에 한국한자음을 크게 쓰고 그 아래에 『사성통해』에 바탕을 둔 중국본토음(漢音)을 쓰고 있으며 각 한자 아래에는 간단한 字釋을 달아 놓았다. 3책 중 卷上·下 2 책에는 平聲 30韻에 5062字, 上聲 29韻에 2556字, 去聲 30韻에 2961字, 入聲 17 韵에 2386字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補卷은 玉篇으로 1회에서 17회까지 224部에 本書에 수록된 한자가 자획순으로 되어 있으며 한자 밑에는 한글 표음 없이 韵目만을 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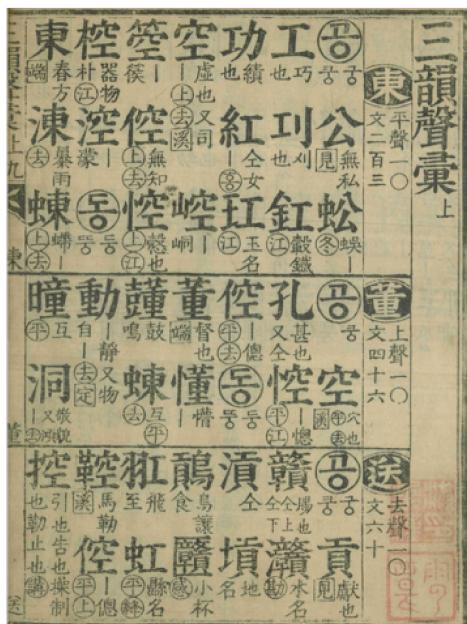
이 책의 凡例에는 ‘洪武韻字母之圖’와 ‘諺字初中終聲之圖’가 실려 있다. 특히 ‘諺字初中終聲之圖’에는 한글의 初·中·終聲을 도식으로 그려 놓고 있는데 18세기에 사용되던 한글 字母數와 함께 자모 배열 순서를 보여 주고 있어 국어학사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삼운통고』는 106韻系 『禮部韻略』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편한 운서이고, 『삼운성휘』는 『삼운통고』의 체재를 그대로 따르면서 한국한자음 위주로 개편한 운서로 한자음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³²⁾

『삼운성휘』의 편찬 경위는 영의정 金在魯(1682-1759)의 서문 및 홍계희의 발문에 잘 나타나 있다. 먼저 김재로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보인다.

내가 일찍이 사역원의 제조가 되어 『삼운통고』를 가지고 글자마다 중국본토음(漢音)과 우리나라 한자음을 기록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같고 다름을 훤히 알게 하려고 하였으나, 說文·古今韻會舉要·字彙 등의 자음과 반절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 많아서 어떤 글자가 어떤 반절로 표시된 소운대표자의 자음과 맞지 않으니 이미 우리나라 한자음의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나의 음을 바로잡고자 하면 여러 글자를 두루 살펴야 되므로 몇 시간씩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많아서 그 어려움

3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어문학자료해제 ‘삼운성휘’조 참조.

이 이와 같다. 그래서 직무가 바빠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이제 병조판서 홍계희가 젊은 시절부터 字學에 힘을 기울이고 漢語에 능통하여 한자음을 바로잡겠다고 뜻을 내비치기에 내가 기뻐하며 그에게 부탁하였다.³³⁾



〈그림 2〉『삼운성휘』

본래 김재로가 사역원의 제조를 역임할 때 『삼운통고』(『증보삼운통고』)를 사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각 한자에 한국한자음과 중국본토자음을 첨가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너무 번거롭고 직무가 바빠서 도중에 포기했는데 字學 및 중국어에 능통한 홍계희가 이 작업에 뜻을 두었으므로 그에게 부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홍계희는 『삼운성휘』 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33) “不佞嘗提舉譯院，欲就三韻通考，逐字而竝註華我音，俾覽者曉然知同異，而說文·韻會·字彙諸書，字音與反切率多牴牾，而不合其所謂某音某反之本字，已被我音之譌謬，欲正一字之音，轉攷諸字輒費數時，其難如是，故職事無暇，仍成拋置矣。今大可馬洪君純甫，自少精於字學，兼通華語，慨然有意於修整，不佞竊喜而屬託之。”

글자는 설문을 근거로 해서 뜻과 형체의 설명에 힘을 기울였으나 결국에는 자음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삼운성회’라고 이름을 붙였다. 병인년(영조 22년, 1746) 겨울에 유신들의 주청을 받아들이시어 간행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내각에서 간행을 위한 초고를 요구해왔지만 직무가 바빠서 이를 정리할 겨를이 없었다. 마침 典籍 鄭忠彥이 운학에 밝았는데 이 작업을 기끼어 도와줘서 완성을 본 다음 여러 번 편집을 거듭하고 반년 동안 교열작업을 거치고서 이제야 마칠 수 있게 되었으니 심히 기쁘도다.³⁴⁾

여기서 홍계희는 영조 22년(1746) 겨울경에 이미 『삼운성회』의 초고가 완성되고 또 내각에서 간행하라는 윤허까지 받았지만, 이후 직무가 바빠서 계속 손을 놓고 있었으며, 결국 운학에 밝은 사역원의 鄭忠彥의 도움으로 완성을 보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영조실록』 영조 22년(1746) 11월 8일조에는 당시 홍계희가 운서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관련 기록이 보인다.³⁵⁾ 그리고 『삼운성회』 편찬에 도움을 준 정충언은 漢學文臣으로 경연 강독에 참가할 때마다 중국어 발음 및 字學에 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경전을 잘 읽어 영조 및 대신들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았으며,³⁶⁾ 홍계희 또한 그의 중국어 실력을 인정하고 있다.³⁷⁾

34) “字以說文爲準，蓋於義與形，亦未嘗不致力，而畢竟聲爲之主，故命之曰三韻聲彙。丙寅冬，因儒臣言，有刊行之命。秘閣索草本，而職務倥偬，未暇整頓。典籍鄭忠彥，明韻學，樂助成之，往復編摩，閱半歲而卒業，甚可喜也。”

35) 『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 11월 8일 己亥조 “上御歡慶殿，講『夙興夜寐箴』，製下序文，命校理黃景源書之，而付藝閣刊出，景源請以世宗朝所撰『四聲通解』，附註於『增補韻考』而刊行之，修撰洪益三曰：“刑曹參議洪啓禧，留意於此，又有成書而參證於首揆，規模詳密，待畢役刊行，似宜矣。”上許之。”

36) 『승정원일기』 영조 28년(1752) 6월 17일 병오조 “壬申六月十七日卯時，上御熙政堂，親臨漢學文臣殿講入侍時，(中략) 次鄭忠彥，第十七章，五通一略，上曰，鄭忠彥，昨年亦善爲之矣(中략) 上曰，居首直講鄭彙晉，判官鄭忠彥，各半熟馬一匹賜給。”；『승정원일기』 영조 28년(1752) 6월 18일 정미조 “上曰，如鄭忠彥者，可謂通才也。能文能武，又能習於漢學，如此人才，於古難得也。”；『승정원일기』 영조 30년(1754) 윤4월 22일 신미조 “乾隆十九年甲戌閏四月二十二日辰時，上御崇文堂，親臨漢學文臣殿講入侍時，(中략) 副司果鄭忠彥進伏讀訖，上曰，此人才也。趙榮國曰，此依法讀之，牙舌分明，句語不差。諸臣皆曰，然矣。成天柱曰，此人熟於漢語，故字學亦奇絕。上曰，汝見雜科乎？忠彥曰，不見。收性，純通。”

37) 『승정원일기』 영조 30년(1754) 5월 16일 갑오조 “甲戌五月十六日辰時，上御崇文堂，親臨專經文臣殿講入侍時，(中략) 鄭忠彥進講後，上命更以漢語講之。上曰，將來可用之人也。洪啓禧曰，甚英敏矣。上曰，人才矣。然而恃才而驕，可折其氣矣。上曰，居首兵曹正郎金永燮，

그런데 成大中의 『青城雜記』에서는 『삼운성휘』의 편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용서는 대부분 신분이 미천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 (중략) 『화동 정음통석운고』는 박성원이 완성했고, 『삼운성휘』는 鄭忠彥이 완성했는데 홍계희가 빼앗아 자기 저술로 삼았다. 박성원과 정충언은 모두 중인 출신이다.³⁸⁾

성대중은 우리나라 운서가 대부분 중인 출신들의 손에서 나왔다고 전제하고, 『삼운성휘』 또한 정충언의 손에서 나왔지만 홍계희가 그의 공로를 가로챘다고 했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삼운성휘』를 편찬 간행할 당시 홍계희는 병조판서에 재임하고 있었고, 서문을 쓴 김재로는 영의정이었다. 당시 최고 권력에 있던 김재로의 기획을 홍계희가 대신하여 책임 편찬하면서 자학 및 중국어에 뛰어난 많은 인재를 동원했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정충언이었을 것이다. 홍계희가 빌문에서 유독 정충언의 조력을 언급한 것을 보면 실제로 『삼운성휘』 편찬 과정에서 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홍계희가 책임 편찬한 『삼운성휘』가 영의정 김재로의 서문을 받아 내각에서 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삼운성휘』가 홍계희 한사람의 개인적 관심사에서 편찬된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편찬 간행된 관찬 운서이었음을 의미한다. 이 점이 같은 시기 중인 출신의 박성원이 편찬한 『화동정음통석운고』와 크게 구별된다. 따라서 『삼운성휘』은 간행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었으며 또한 검색이 편리하다는 호평을 받았다.³⁹⁾ 그리고 국왕 영조는 경연 등에서 운자를 검색할 때마다 『삼운성휘』를 이용하고 있으며,⁴⁰⁾ 또한 각종 시험에서 성적 우수자에게 포상으로 이 책을 하사하고 있다.⁴¹⁾ 『삼운성휘』가 간행된 지 18년이 지난 영조 45년(1769)에 전주

承文校檢鄭忠彥, 奉常主簿李鳳翼, 各半熟馬一匹賜給.”

38) 『青城雜記』 권4, 「醒言」 “我國需世之書, 多出於卑微, (중략) 華東正音, 成於朴性源, 三韻聲彙, 成於鄭忠彥, 而洪啓禱攘爲其物, 二者並委巷也.”

39) 『승정원일기』 영조 28년(1752) 1월 18일 경진조.

40) 『승정원일기』 영조 33년(1757) 2월 5일 정묘조; 영조 43년(1767) 윤7월 26일 정사조.

에서 개간되었다는 사실은 이 책의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字學에 밝고 중국어에도 능통한 홍계희는 『삼운성휘』의 편찬 이외에도 많은 출판 사업에 관여하게 된다. 홍계희는 『삼운성휘』의 편찬을 일단락 지은 다음 『四書栗谷諺解』 사업에 참여하고 영조 25년(1749)에 이를 간행했다. 또한 영조 27년(1751)에는 명대 御賜本 『洪武正韻』 복각본의 간행을 건의하여 윤허를 받는다.⁴²⁾ 그리고 영조 46년(1770)에 영조를 대신하여 홍계희가 작성한 서문을 붙여 16권 5책으로 재간했는데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3종의 『洪武正韻』은 이때의 목판본이다.⁴³⁾ 홍계희는 명나라 高皇帝 朱元璋의 360년忌辰일에 맞춰 이 책을 재간했다.⁴⁴⁾ 영조는 이때 간행된 『홍무정운』을 친히 받드는 행사를 거행했으며, 이때 동궁에서 학문에 전념하고 있던 정조 또한 한질을 하사받았다.⁴⁵⁾

또한 홍계희는 영조 37년(1761)에 중국어 회화 교재 『老乞大』의 중국어 음을 당시 북경에서 사용하는 현실음으로 새롭게 교정하여 간행하고 이를 사역원에 반사했다. 이것이 『老乞大新釋』으로 여기에는 홍계희의 서문이 있다.⁴⁶⁾ 그는 또

41) 『승정원일기』 영조 33년(1757) 1월 8일 경자조.

42) 『승정원일기』 영조 27년(1751) 8월 21일 갑인조 “啓禧曰，書冊非臣職掌，而有所懷故敢達。洪武正韻，即太祖皇帝所纂定者，而我國表音文字，皆依此字樣書之。故承文院，有唐本一秩，而字樣極好，丙子以後，則胡人刮在洪武二字，近來則燕市無此書久矣。我國若不印行，則洪武正韻，將不得復行於天下矣，豈不慨然乎？若槐院所在本弊盡，則雖欲重刊，有不可得。及此時，分付校書館，以此本開刊，何如？上曰，使校書館刊行，可也。”

43) 〈奎中 2049, 2120〉, 〈一簋 古 495.16-N131h-v.1-5〉, 〈古 3914-7〉.

44) 『승정원일기』 영조 46년(1770) 5월 21일 정유조 “啓禧曰，洪武正韻，太祖皇帝命宋濂書進者，而一本頒賜，表奏文字，皆用其體矣。傷破已久，字劃剥壞，故重臣徐命臣，爲提調時筵白，經紀重刊之道，幾至成就，而其間無董工者，故迄未了訖矣。近頗申飭，今幾盡刊矣。上曰，今聞似有前日所奏，而此事非偶然，來月初十日，即高皇帝忌辰也，豈偶然哉？啓曰，幾乎盡刊，初十日當進上矣。仍命書洪武正韻序訖。”

45) 『승정원일기』 영조 46년(1770) 윤5월 9일 갑인조 “上曰，明日望拜後，當於月臺，親受洪武正韻，以此分付芸閣。”; 『승정원일기』 영조 46년(1770) 윤5월 10일 을묘조 “右承旨李萬恢啓以洪武正韻進御件，今方待令於門外，時無下教，故不敢入矣。上欲起而復伏者再，天明，上起御庭東，東宮亦隨立其後，上曰，洪武正韻進上件入之，予當親受矣，未及進前，上又曰，見在何處？萬恢曰，今方入之矣。上曰，龍亭奉入乎？曰，然矣。上親受後，又使東宮親受一件，上步還至月臺上簷下，御于方席上。”

46) 이 서문에 의하면 이 해 중국에 가는 사신의 임무를 수행한 홍계희가 역관에게 부탁하여 구본 『노걸대』를 수정하였다고 한다.

한 사역원의 제조 및 도제조를 역임하면서 『노결대신석』의 편찬과 간행뿐만 아니라 『改修捷解新語』, 『清語老乞大』 등 많은 역학서의 편찬과 간행 사업을 주도했다.⁴⁷⁾ 그리고 영조 45년(1769)부터 『朱子大全』과 『朱子語類』의 교감작업을 진행하고, 영조 47년(1771)에 이 거칠의 두 책을 간행하고 생을 마친다.⁴⁸⁾

이처럼 홍계희는 영조 집권 후반에 중앙무대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서적의 편찬과 간행 사업을 주도했다. 그리고 그가 참여하여 편찬 간행한 서적들은 모두 영조의 윤허를 얻어 내각에서 간행된 이른바 관찬 서적이었다. 『삼운성회』 또한 관찬 운서로 간행과 함께 폭넓게 활용되었다.

5. 정조와 홍계희

그런데 安鼎福이 작성한 『桂坊日記』에는 동궁시절 정조와 『삼운성회』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안정복은 1773년 12월에 세자익위사 衛率에 首望으로 제수되어 1774년 정월 16일에 동궁에 입직하게 되었는데,⁴⁹⁾ 그가 입궐한 지 3일 후인 19일에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정월 19일(계유) 서연을 정지하였다. 동궁이 음식을 내렸다. 지난 임진년(壬辰, 1772) 여름에 입직했을 때의 일이다. 어떤 春坊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되어 司鑰이 동궁이 친히 지은 『三韻聲彙』 서문을 가지고 왔다. 이것은 친필의 草本인 듯하였는데, 그로 하여금 正書하여 卷首에 올리게 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앉은 채로 한 손으로 받는 것을 보고는 매우 오만하고 옳지 않은 일로 여겼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하번인 세마 鄭志儉을 보고 말하기를, “관대를 갖추고 경건히 받아야 될 듯하오.” 하니, 대답하기를, “상번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

47) 정광·윤세영, 1998 『司譯院譯學書冊版研究』, 고려대학교출판부, 273면.

48) 정선모, 2016 「조선후기 『주자어류』 연구의 특징: 『주자어류고문해의』의 편찬배경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74.

49) “癸巳(1773)五月二十七日. 上以春桂坊官員, 擇差久任置簿之意下敎. 十二月二十二日都政, 擬余翊衛司衛率首望, 副望李毅敬, 末望柳光翼, 蒙點. 翌年正月十一日, 與家兒入京, 住晦洞成掌令穎秀夫家. 十六日庚午, 肅命, 仍爲入直.”

니다.”하였다. 드디어 관대를 갖추고 경건히 받은 다음에 가운데다 놓고 열어 보니, 盛饌으로 모두 아홉 그릇이었다. 하변이 셋으로 나누도록 해서 兩官이 마주 앉아 먹고, 나머지 하나는 吏隸에게 주었다.⁵⁰⁾

정조가 동궁시절 곧 임진년(壬辰, 1772) 여름에 홍계희가 편찬한 『삼운성휘』에 직접 서문을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삼운성휘』는 관찬 운서로써 국왕 영조를 비롯하여 조정의 문신들 사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동궁에서 학문에 매진하던 왕세자 정조 또한 『삼운성휘』를 이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조는 어떤 계기로 『삼운성휘』의 서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작성한 서문을 동궁에서 보위하는 문신에게 정사하여 바치게 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를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때 정조가 작성했다는 서문은 현재 전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정황은 파악할 수가 없다.

정조가 동궁시절 이미 홍계희가 편찬한 『삼운성휘』를 열람하고 여기에 서문을 작성했다는 기록을 통해 우리는 이른 시기 정조의 운서에 대한 관심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즉위 이후 정조의 운서 편찬 정책에도 『삼운성휘』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실제로 정조가 즉위 초기부터 운서 편찬에 관심을 가지고 서명웅에게 『규장운서』를 편찬하도록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승정원일기』 정조 2년(1778) 11월 29일 을묘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韻書는 어찌하여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가?”하니, 서명웅이 말하기를, “邵長衡·呂裕祺의 운서를 살펴보면 通韻과 協韻의 법이 각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삼운통고』와 『삼운성휘』 등의 책은 沈約의 韵字 풀이로 더불어 서로 더하고 덜함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절충하기가 어려워 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⁵¹⁾

50) 『順菴先生文集』 권16, 『雜著·甲午桂坊日記』 “正月十九日癸酉，書筵停，東宮賜饌。余念壬辰(1772)夏入直時，有一春坊來話，俄而司鑰持睿撰三韻聲彙序文而來，似是親筆草本，使之正書弁卷。其人坐以一手受之，看甚傲慢不是。至是，余謂下番鄭洗馬志儉曰，似當具冠帶祇受。答曰，上番之意如是，則可矣。遂具冠帶祇受，置中間開視，盛饌也。凡九器。下番令分爲三，兩官對食，一分給吏隸。”

51) 『승정원일기』 정조 2년(1778) 11월 29일 을묘조 “戊戌十一月二十九日午時，上御誠正閣。

이 자료는 『규장운서』의 편찬 작업이 정조 2년(1778)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서명웅이 「方言集釋序」에서 “上之二年戊戌(1778), 既撰奎章韻瑞”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과도 서로 부합된다. 따라서 정조의 운서 편찬에 대한 관심은 적어도 정조 2년(1778)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정조가 운서 편찬을 재촉했지만 서명웅은 『삼운통고』 및 『삼운성휘』와 沈約의 사성운 체재를 절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서명웅은 이 시기 이미 편찬을 완성했지만 여러 가지 미비점으로 아직 정조에게 올리지 못하고, 다음해(1779)에 『규장운서』 8권을 최종 완성하여 올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서명웅이 운서 편찬에 활용하고 있던 운서가 당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던 삼성운 체재의 대표적인 운서 『삼운통고』(『증보삼운통고』)와 『삼운성휘』이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영조시기 관찬 운서였던 홍계희의 『삼운성휘』가 중요한 참고 운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 서명웅이 편찬한 『규장운서』 8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간행되지 못하고 결국 다시 『규장전운』의 편찬을 기다리게 된다.

그런데 이후 정조는 운서를 언급할 때마다 『삼운성휘』가 아닌 박성원의 『화동정음통석운고』만을 언급하고 있다. 일찍부터 운서에 관심이 많았고 더욱이 『삼운성휘』에 서문까지 썼던 정조가 이 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의외의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정조 5년(1781)에는 박성원의 『화동정음통석운고』을 내각에서 간행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관 이덕무에게 하사하고 있으며, 이후 시행되는 각종 시험에서 성적 우수자들에게 이 책을 하사하고 있다. 그리고 정조 11년(1787)에는 『화동정음통석운고』의 명칭을 『正音通釋』이라 개정하고 여기에 서문을 붙여 내각에서 간행하도록 했으며, 이 서문에서 박성원의 공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이덕무는 『규장전운』을 편찬하고 정조의 요구로 올린 대책문 「六書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 주목된다.

判府事·掌樂提調入侍時，判府事徐命膺，掌樂提調李重祐·金用謙，右副承旨徐有防，假注書柳文養，記事官李信祐·鄭東浚，以次進伏訖。（중략）上曰，韻書則何不成出乎？命膺曰，得見邵長蘅·呂裕祺所著韻書，則通韻協韻之法，各有異同，通考·聲彙等書，又與沈約韻字，互有增刪，則以是折衷爲難，成書未易矣。”

신은 엎드려 생각건대, 朴性源은 여향의 匹夫이고 그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도 저 술이 없어지게 되매, 그의 『正音通釋』을 구하여 임금이 서문을 지어 주시고 판각하여 반포할 것을 명하시었으니, 신은 감격하여 聖政이 百王에 뛰어남을 흠흥합니다.⁵²⁾

이덕무는 정조가 이미 고인이 된 여향의 필부에 지나지 않았던 박성원의 『正音通釋』 즉 『화동정음통석운고』를 구하여 직접 서문을 쓰고 판각하여 반포하도록 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조 11년(1787) 3월의 일이다. 이후 정조는 각종 시험에서 우수자에게 『正音通釋』을 하사하고 있으며 과거시험장에도 휴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조가 영조시기 관찬 운서인 홍계희의 『삼운성회』 대신 여향의 필부에 지나지 않았던 박성원의 『화동정음통석운고』를 채택하여 간행하고 반사했던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이는 정조의 부친 思悼世子가 사망하게 된 사건에 홍계희가 깊이 관여한 사실 및 홍계희의 두 孫子가 정조를 시해하려 했다는 역모사건의 발생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⁵³⁾

홍계희는 영조 38년(1762) 경기도관찰사로 있으면서 영조 繼妃의 아버지 金漢耆 및 영의정 金尚魯 등과 결탁하여 思悼世子의 잘못을 고변케 함으로써 결국 세자가 죽음에 처하게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조는 성인이 되면서 부친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배후 사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조는 언제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일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정조의 즉위 전후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1776) 5월 26일의 다음과 같은 사건이 주목된다.

충청도 유생 成泰柱 등이 全義의 雷巖書齋를 서원으로 삼아 故參判 李翔과 故參贊 李緯를 함께 제사지내되 홍계희를 배향하고, 이어서 서원의 이름을 내려주

52) 『青莊館全書』 권20, 「雅亭遺稿十二·六書策」(王子八月, 命公編纂奎章全韻, 書既成, 命閣臣尹行焦·徐榮輔·南公轍·承旨李書九·李家煥·校書校理成大中·檢書官柳得恭·朴齊家校正, 仍命諸臣對策) “臣竊伏念, 朴性源閭巷匹夫也, 其人已歿, 著述湮晦, 於是求正音通釋, 御序弁卷, 仍命刻頒, 臣固感激欽仰, 聖政之度越百王.”

53) 강신항 또한 “단지 한글로 표음한 면으로만 본다면 정조시대에는 洪啓熙의 『三韻聲彙』도 통용되었을 텐데, 그보다도 『정음통석』을 더 중시한 것은 정조시대에는 洪啓熙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였다. 姜信沆, 앞의 책, 199면 참조.

기를 청하는 상소가 있었다.⁵⁴⁾ 당시 성태주를 비롯한 충청도의 일부 유생들은 宋時烈-李翔-李緯-洪啓禧로 이어지는 학통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소에 대해서 정조는 송시열을 매우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하면서, 이재의 문인들을 불러서 홍계희의 사승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⁵⁵⁾ 그리고 이재 문인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정조는 동방의 주자인 우암의 연원에 홍계희를 연결시키는 것은 진실로 학계의 큰 변괴이라고 말하고,⁵⁶⁾ 성태주를 江界府로 유배보냈다.⁵⁷⁾

그런데 다음 해(1777) 홍계희의 두 孫子가 정조를 시해하려 했다는 역모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되어 홍계희의 두 아들 趾海·述海와 그 일가가 처형당하게 되었으며, 홍계희의 관작은 추탈되어 逆案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홍계희에 대한 성토 및 홍계희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다. 따라서 홍계희의 생전 업적에 대해서도 재평가 되었으며, 특히 홍계희가 주도하여 편찬 간행된 대부분의 서적들에서 그의 이름이 삭제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고려해 보면 운서 편찬에 있어서도 정조가 홍계희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정조는 즉 위 초부터 서명웅 등을 통해 당시 널리 이용되고 있던 홍계희의 『삼운성휘』를 대신할만한 운서 편찬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작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정조는 박성원의 『화동정음통석운고』를 구하여 내각에서 간행하면서 『삼운성휘』를 대신하고자 했으며, 다시 이 책을 『정음통석』으로 이름을 바꾸고 여기에 자신의

54) “忠清道幼學成泰柱等上疏, 請以全義雷巖書齋爲書院, 合祭故參判李翔, 故參贊李緯, 以洪啓禧配之, 仍賜院號。”

55) “觀此儒疏, 以洪啓禧爲宋先正淵源嫡派, 至有書院合設之請。噫! 先正道學, 有此等疏請, 辱先正大矣。雖然朝家處分, 不可不明白, 間於師受陶庵之人則可知矣。”

56) “噫! 先正吾東之朱子。以啓禧上接先正之淵源, 實是斯文之一大變怪, 朝廷處分, 當以爲先正處之。”

57) 성태주를 비롯한 충청도지역 유생들이 雷巖書齋에 李翔, 李緯와 함께 홍계희를 배향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정조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조는 이때 이미 부친 思悼世子의 죽음에 홍계희가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문을 붙여 간행하면서 관찬 운서로서의 정통성을 내세우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정조는 「正音通釋序」에서 “또 『삼운통고』 원본을 대본으로 하여 글자마다 주석을 달면서도 감히 그 序次만은 바꾸지를 못했는데, 그 역시 의문점은 그대로 두자는 뜻이었다. 내가 그 책을 취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이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 보면, 『규장전운』의 편찬은 정조의 음운학에 대한 깊은 관심보다도 부친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관여한 홍계희의 존재를 지우고자하는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정조의 의도와는 달리 『화동정음통석운고』는 내용뿐만 아니라 활용도에 있어서 홍계희의 『삼운성회』을 대체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책은 무엇보다도 사성운 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조는 이들 운서를 대신할 수 있는 사성운 체재의 『규장전운』을 편찬 간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규장전운』의 편찬 배경을 고려한다면 정조가 『삼운성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증보삼운통고』 및 박성원의 『정음통석』만을 거론하며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었던 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규장전운』의 편찬을 주도한 이덕무 또한 정조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덕무 또한 「奎章全韻凡例」에서 홍계희 및 『삼운성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제 운서를 편집함에 『홍무정운』字母를 따랐고 『四聲通解』는 언문으로 번역하였다. 음에 있어서는 우리 음은 자모의 법을 따라서 각 글자 주해의 아래에 한글로 썼다. (중략) 근세에 일종의 운서(近世一種韻書)는 한글로 우리 음을 크게 쓰고, 그 아래에 중국 음을 작게 써서 위치와 차례가 도치되어 명분에 흠이 있기 때문에 일체 개정하고 따르지 않았다.⁵⁸⁾

여기서 말하는 ‘근세에 일종의 운서(近世一種韻書)’는 다름 아닌 홍계희의 『삼운성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덕무는 또 같은 글에서 편차상의 특징을 논하면서

58) 『青莊館全書』 권24, 「編書雜稿四·奎章全韻凡例」 “今編韻書，就洪武正韻字母，而從四聲通解諺翻之音。東音則律之以字母之法，各字註解之下，以諺字。(中略)近世一種韻書，以諺字，大書東音，其下小書華音，位次倒置，有欠正名，故一切改正而不從。”

“『홍무정운』에서의 운 배열은 자모의 차례를 함께 써서 서로 첫머리를 삼았는데, 이제 그 보기를 본받아서 한글 곧 일반에서 말하는 반절(한글)의 차례로 수록자의 순서를 정하였다.”라고⁵⁹⁾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홍계희가 『삼운성휘』를 편찬하면서 처음으로 시도한 방식이다. 사성에 소속된 각 글자의 순서를 한글의 자모순에 따라 배열한 것으로 한국 운서 발전에서도 아주 중요시되는 점이다. 하지만 이덕무는 여기에서도 홍계희 및 『삼운성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덕무의 태도에서도 정조와 홍계희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다.

6. 맺음말

본고에서는 정조와 홍계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규장전운』의 편찬 경위를 살펴보고, 『규장전운』의 편찬 배경에는 정조의 운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조와 홍계희의 미묘한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논증했다.

정조는 일찍부터 운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동궁시절 임진년(壬辰, 1772) 여름에 홍계희가 편찬한 『삼운성휘』에 직접 서문을 작성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조는 즉위를 전후하여 『삼운성휘』을 편찬한 홍계희가 부친 恩悼世子의 죽음에 깊이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정조 즉위 다음연도에 일어난 홍계희 손자들의 역모 사건을 계기로 이후 홍계희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정조 2년(1778)부터 서명웅 등을 통해 당시 널리 이용되고 있던 홍계희의 『삼운성휘』를 대신할 만한 운서 편찬을 시도한다. 하지만 서명웅이 편찬한 『규장운서』 8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정조 5년(1781)에는 여항의 필부에 지나지 않았던 박성원이 편찬한 『화동정음통석운고』를 구하여 내각에서 간행하여 『삼운성휘』를 대신하고자 했다. 그리고 정조 11년(1787)에는 박성원의 『화동정음통석운고』의

59) 『青莊館全書』 권24, 「編書雜稿四·奎章全韻凡例」 “洪武正韻排韻，俱用字母之次，互相爲統，今倣其例，以諺書俗稱反切之次爲定。”

명칭을 『정음통석』으로 바꾸고 여기에 자신의 서문을 붙여 간행하면서 관찬 운서로서의 정통성을 내세우고자 했다. 또한 이후 각종 시험에서 성적우수자에게 『정음통석』을 하사하고 있으며 과거시험장에도 이 책을 휴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정조의 의도와는 달리 『화동정음통석운고』는 내용뿐만 아니라 활용도에 있어서 홍계희의 『삼운성회』를 대체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책은 무엇보다도 사성운 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해온 정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 따라서 정조는 이들 운서를 대신할 수 있는 사성운 체재의 『규장전운』을 편찬 간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하지만 『규장전운』편찬에 참여한 규장각 문신들이 구체적인 편찬 작업을 진행하는 데는 홍계희가 편찬한 『삼운성회』의 성과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는 『규장전운』을 편찬하면서 이덕무와 성대중 사이에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편지 내용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奎章全韻』은 교정을 해도 여전히 교정거리가 생겨서 사람의 머리를 희게 하니 어찌면 좋을까요? 藝苑에서의 어려운 일은 교정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반나절 교정한 것은 이처럼 빠르고도 정밀하니 欽仰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부전지 붙인 곳은 고쳐야 할 곳도 있고 고치지 아니할 곳도 있습니다. 이 책의 범례는 감히 덜어낼 수 없으니, 『삼운통고』 가운데의 原·增 각 한 글자는 다만 『삼운성회』에 增한 1천 4백여 자 가운데서 수십 자를 감했을 뿐입니다. 때문에 아홉 사람의 (임금께서 公에게 명하여 韻書를 편집하게 하여 그것을 『奎章全韻』이라 하고, 이어 閣臣 尹行憲·南公轍·徐榮輔·承旨 李書九·李家煥, 外閣校理 成大中, 檢書官 柳得恭·朴齊家와 公을 포함해 아홉 사람에게 명하여 함께 교정하게 하였다.) 교감자의 注脚이 『삼운통고』 중의 글자와 함께 혹 떨어진 곳이요, 『삼운성회』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물으신 모든 문제는 일일이 써 올리니,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⁶⁰⁾

60) 『青莊館全書』 권16, 「雅亭遺稿八, 書二·成士執(大中)」 “奎章全韻，隨校隨生，令人頭須欲皓，奈何。藝苑難事，莫如校讐，以其易淹滯而善遺漏也。今此半日所校，若是敏且精，不勝欽仰。付籤處，或有當改與不改耳。此書爲例，不敢減却。通考中，原增一字，只就聲彙所增千四百餘字中，減數十字。所以九人(上命公編輯韻書曰，奎章全韻，仍命閣臣尹行憲·南公轍·徐榮輔·承旨李書九·李家煥·外閣校理成大中·檢書官柳得恭·朴齊家，并公，凡九人同校)，校勘者注脚，與通考中字，或落也，非聲彙之謂也。諸條俯問，一一書呈，覽之可詳耳。”

이처럼 이덕무 등은 『규장전운』의 편찬 및 교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홍계희의 『삼운성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또한 비판적으로 수용했다.⁶¹⁾

선행연구에 의하면 『규장전운』은 평성·상성·거성·입성을 한 면에 제시하는 4단구성을 제외하면, 華東 양음 표기법, 한글자모순의 배열, 한자 및 주석의 증보, 그리고 부록으로 옥편을 첨가하고 있는 등 체재와 내용 면에서 『삼운성휘』와 거의 같다고 한다.⁶²⁾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보충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정조와 홍계희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삼운성휘』와 『규장전운』을 좀 더 세밀하게 비교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주제어 : 正祖, 洪啓禧, 恩悼世子, 『奎章全韻』, 『三韻聲彙』

투고일(2018. 6. 4), 심사시작일(2018. 6. 4), 심사완료일(2018. 6. 18)

61) 『青莊館全書』 권16, 「雅亭遺稿八, 書二·成士執(大中)」 “牷注, 改以牝牛似好. 牷是牝牛, 歷攷諸書皆然, 而聲彙譌作牡牛.”

62) 姜信沆, 앞의 논문 참조; 실제 『규장전운』과 『삼운성휘』, 『화동정음통석운고』를 비교하여 보면 『규장전운』은 『삼운성휘』에 훨씬 가깝다. 한자음을 보면 『규장전운』은 극히 일부(몇 글자 정도)의 예를 제외하고는 『삼운성휘』에서 제시한 음과 동일하다. 『전운옥편』은 규범음은 『삼운성휘』와 가깝고 正音과 俗音은 『화동정음통석운고』의 음을 반영하고 있어서 양자와 모두 관련을 맺는다. 그리고 『규장전운』은 4단 체재로 되어 있어서 3단 체재로 되어 있는 『삼운성휘』와 『화동정음통석운고』와는 차이가 있지만, 편집 양식이나 글자의 제시 순서를 볼 때에는 『삼운성휘』와 흡사한 것을 볼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n Compilation Background of “Kyujangjeonun”

- On the focus of Jeongjo and Honggyehui's relationship -

Jung Sunmo *

“Kyujangjeonun”, compiled by civil officials of Kyujanggak under the imperial order of Jeongjo at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was the epitome of the Korean phonological books in the past dynasties. Studies on “Kyujangjeonun” were mainly carried out by linguistics researchers in the past who emphasized its significance in language history. The majority of studies on it focuses on the features of it by comparing the style and content of “Huadungseongeumtungseokmugu” by Bakseongwon with that of “Samwoonseunghoi” by Honggyehui. The study of the compilation background of “Kyujangjeonun” is mainly focused on the interest of Jeongjo in phonology presented by it, while ignoring the historical facts behind it. Study on the change of attitude of Jeongjo to the “Samwoonseunghoi” and the process of his deletion of Honggyehui will be carried out in this paper to reveal the fact that that Jeongjo directed to issue the “Huadungseongeumtungseokmugu” by written by Bakseongwon rather than “Samwoonseunghoi” written by Honggyehui and re-edit and re-issue of “Kyujangjeonun” was to delete the existence of Honggyehui who was connected to the death of Jeongjo's father, Prince Sado.

Key Words : Jeongjo, Honggyehui, Prince Sado, “Kyujangjeonun”, “Samwoonseunghoi”

* Associate professor, Nanjing University.